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440호
----------	-------

2016. 9. 9.(금)
정 책 복 지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장선배 의원 등 7명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6년 8월 19일
- 회부일자 : 2016년 8월 22일

다. 상정일자 : 2016년 8월 30일

-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장선배 의원)

가. 제안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과 환경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미세먼지에 관한 경보의 내용, 기준, 방법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 오염도 경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함.
※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표준조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4200, '14.10.31)

나. 주요내용

- 미세먼지(PM-10, PM-2.5) 및 경보에 관해 정의함. (안 제2조)
 - ※ 미세먼지(PM-10, PM-2.5)경보제 본격 시행('15. 1월)
- 미세먼지 경보의 발령 및 해제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규정함. (안 제4조, [별표 1])
- 미세먼지 경보 방법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별표 2])
 - ※ 건강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민감군과 일반인을 구분한 조치사항 권고
-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조치사항 추진과 관련해 인근 시·도와의 협력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
- 대기오염측정망의 확대 설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규정함 (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

-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과 환경부에서 권고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미세먼지(PM-10, PM-2.5)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 안 제2조에 “미세먼지”, “경보”, “경보단계”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 따른 [별표 1]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오염 경보 단계별 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에 경보 방법을 안 제6조 및 [별표2]에는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도지사의 조치사항을 도민 건강보호 부문과 미세먼지 저감 노력 부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8조는 경보 발령 시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차량의 운행자와 사업장·공사장 운영자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시·도간 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2013년 7월 16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재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토록 하고, 2015년 1월부터 미세먼지(PM-10, PM-2.5)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차원의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에 따른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입법예고(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6-29호) 및 충북보건환경연구원과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법적, 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안」 1부.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의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2.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의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 이를 충청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단계”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의 2단계를 말한다.
4. “미세먼지 농도”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는 미세먼지의 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건강상 조치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도와 시·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 조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경보 방법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경보의 내용을 언론기관과 유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야외활동 중인 도민들도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도로 등 도민의 왕래가 잦은 공간에 설치된 전광판 및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경보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경보 대상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경보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보 발령 시 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민감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보건소·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경보에 따른 조치 결과 확인) ①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 및 권고를 받은 기관 등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미세먼지 저감 노력) 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긴급한 경우 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도간 협력)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 건강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도 내 미세먼지 경보 발령권역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조치 등이 권역별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대기오염측정망의 확대 설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도지사는 미세먼지 경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제4조 관련)

대상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오염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mu\text{g}/\text{m}^3$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오염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오염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mu\text{g}/\text{m}^3$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8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오염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비고]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별표 2]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6조 관련)

경보단계	도민 건강보호	미세먼지 저감 노력
주의보	<p>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 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p> <p>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p> <p>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p> <p>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p> <p>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p> <p>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p> <p>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등을 이용 하는 도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p> <p>아. 그 밖에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p> <p>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p> <p>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p> <p>라.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p> <p>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p> <p>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p> <p>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p> <p>아.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p>
경보	<p>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 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p> <p>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p> <p>다.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p> <p>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p> <p>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p> <p>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p> <p>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p> <p>아. 공원·체육시설·터미널·철도 등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p> <p>자. 그 밖에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p> <p>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p> <p>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p> <p>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p> <p>마. 도로 물청소 또는 분진청소 등 강화</p> <p>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p> <p>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p> <p>아.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p>

관계법령 발취

□ 대기환경보전법

-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 ④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지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1. 미세먼지(PM-10)
 2. 미세먼지(PM-2.5)
 3. 오존(O₃)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미세먼지(PM-10): 주의보, 경보
2. 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
3. 오존(O3):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1. 주의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2. 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3. 중대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 3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
6.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7.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 7의2.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에 대한 저감효율 확인 검사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 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